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 2923-1 제안연월일 : 2024년 7월 24일

제 안 자: 박선미 의원

1. 수정이유

○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도시 지역 및 설립된 지1년 미만인 신규 설립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"1년"을 "6개월"로 수정 (안 제4조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"1년"을 각각 "6개월"로 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지원) ① 시장은	제4조(지원) ①	제4조(지원) ①
자율방범대의 활동에	<u>1년</u> 이상 지속적으	6개월
<u>필요한</u> 다음 각 호의	로 활동한 자율방범	
경비를 예산의 범위	대의 원활한 활동을	
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위하여	
	,	
1. ~ 7. (생 략)	1. ~ 7. (생 략)	1. ~ 7. 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	② <u>1년</u> 이상 지	② <u>6개월</u>
<u>동에 필요한</u> 다음 각	속적으로 활동한 연	
호의 경비를 예산의	합대의 원활한 활동	
범위에서 지원할 수	을 위하여	
있다.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생 략)	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(생 략)	5. (개정안과 같음)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	6. (개정안과 같음)
③ (생 략)	<u><</u> 삭 제>	